

Q&A

자식경제부소관 LPG관련 행정업무에 관한 해석을 요하는 내용의 질의에 관한 자식경제부의 회신 내용을 게재한다.

자식경제부

동일 대표자이나 다른 사업장일 때 안전관리자 선임

Q 현재 저희 회사는 제1공장과 제2공장이 인접(인접 거리 약4~5Km)해 있으며, 현재 제1공장에 2.9t LPG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사용중에 있음.

향후 현 저장탱크 옆에 2.9t LPG저장탱크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제2공장에도 2.9t LPG 저장탱크를 설치 계획하고 있음.

질의내용은 동일대표자이며 다른 사업장번호를 가지고 있는 제2공장에도 2.9t LPG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해야 하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별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 별로 각각 선임하여야 할 것임. <에너지안전팀>

충전소 허가 예정자, 시설물 소유자 다를시 허가 가능여부

Q 액화석유가스관련 충전소 허가 예정자와 시설물 소유자가 달라 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장 경계내(24M)내의 부지, 건축물(사무소, 캐노피, 저장실)등은 반드시 허가 예정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하는지?

2. 아니면 충전소내 부지 및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임대 임차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취득시 허가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3. 위 충전소 내 시설물(사무소, 캐노피, 저장실) 소유자가 허가 결격사유자일 경우에도 제3자가 임대 임차로 시설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서 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경계 내의 부지, 건축물 등을 반드시 사업자의 소유로 하도록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충전소내 부지 및 건축물,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차로 사용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또한 동법 제5조는 허가를 받으려는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외의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동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소유자로부터 위의 충전소내 부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임대차로 사용 권리를 확보하는 경우에 동법 제4조에 따른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및 충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전사업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할 허가관청이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에너지안전팀>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휴지신고 건

Q 액법제7조[휴지등의신고]를 보면 일정기간 사업을 중시할 경우 휴지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휴지신고를 한 후, 휴지기간이 만료된 이후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을 경우(폐지신고나 개시신고 등)

1. 개시 신고 없이 다시 휴지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휴지기간 만료 뒤 사업 개시 등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액법 제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사업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그 사업을 제재할 수 있는지?

3.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무한정 휴지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인지?

A 제7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함.

1.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3.25]

이에 따르면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재개시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중단의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 (허가의 취소)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사업자의 현저한 귀책사유로 간주되지 않는 사정의 변경 등 사업의 재개시가 지연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허가관청이 제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해당 충전소의 관할 허가관청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실 사항임. <가스산업과>